

아동권리규정에 대한 안내문

아람지역아동센터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람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동권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 분야>

1. 아동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정보 및 기록에 대하여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일반인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체벌금지를 위하여 체벌금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3. 아동권리보장을 위하여 권리보장 정보제공지침서에 따라 신입아동과 보호자에게 권리보장규정과 정보제공지침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4. 아동자치활동 보장을 위하여 자치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참여 및 자치회의 또는 회의록을 장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아동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아동자치회의, 센터 내 의견수렴함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아시고 아동권리 보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년 6 월 30 일

아람지역아동센터



(직인)

* 아동명 :

* 보호자명

아람지역아동센터 아동문서관리 및 비밀보장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권리보장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차별(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장치적 이유 등)과 아동학대 금지, 소수집단권리보장, 권리 침해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 운영, 비밀보장, 체벌금지, 권리보장 및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자치회의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그 목적이다.

2. 적용범위

가. 비밀보장

- 1) 개별아동 정보 및 기록 열람자(담당자)를 제한하여 아동의 비밀을 보장한다.

나. 체벌금지

- 1)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한다.
- 2)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여 체벌이 없도록 적용한다.

다. 권리보장

-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지침서를 작성 및 적용하여 권리를 보장한다.
- 2)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권리 정보를 제공하여 권리를 보장한다.

라. 자치활동

- 1)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자치회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3. 방법과 기준

가. 비밀보장

1) 개별아동정보 및 기록의 관리

아동개인별상담일지, 관찰기록지, 돌봄신청서및결정통지서, 학부모 상담기록, 응급처치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동의서 등 별도의 파일을 만들고 지정 장소에 문서 화일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2) 열람자(담당자) 제한 및 위반 시 조치

사회정보시스템에서 사용권한 부여를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한다.
종사자(센터장과 생활복지사) 이외의 사람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컴퓨터상의 보관 폴더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임의접근과 열람을 예방한다(비밀번호관리는 센터장이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고의적 기밀누설에 따른 시정조치로서 경고,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필요시 관계자에 사과 조치 등 후속조치사항을 기록한다.

나. 체벌금지

1)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 대하여 물리적 도구와 신체,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허한다. 다만, 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는 불가피한 아동의 경우 대체적인 방법으로 1차 아동상담, 2차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은 종사자들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종사자는 반드시 **체벌금지서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체벌 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에 대하여 물리적 도구와 신체,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 시 처벌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3) 단순 위반 시

- 사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과 상담한 후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다.
- 피해아동 및 학부모와 상담하여 정신적, 육체적 이상 유무를 파악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상담, 치료, 재활훈련 등)
- 1차 위반 시 사유서작성, 상담 및 재발방지교육, 2차위반시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며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아동에 대한 상해 유발 시

- 상해관련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체벌자의 사유서를 받고 즉시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며 상해 및 후유증에 대한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센터장은 반드시 학부모와 상의, 객관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

다. 권리보장

1) 아동권리에 대한 안내문 지침서

센터장은 아동권리에 대한 안내문 **지침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2)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권리 정보 제공

센터장은 아동권리 안내문 지침서에 따라 아동과 부모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권리보장규정과 이행상황을 공지하고 아동 및 부모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라. 자치활동

1)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자치회 운영

아동자치회는 **자치회운영규정**과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며 자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그 결과를 대상 아동들이 공지하고 스스로 아동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4. 기타

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및 아동자치회에서 논의하여 좀 더 적극적인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본 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 적용되도록 한다.

2013년 2월 1일

2019년 1월 1일 개정

아람지역아동센터 (직인)

